

서울디지털재단-메이커교육실천 업 무 협 약 서 (M O U)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과 메이커교육실천(이하 “실천”이라고 한다)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메이커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재단”과 “실천”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재단”과 “실천”은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에 정해지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 각각의 업무별로 별도 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협력내용】 “재단”과 “실천”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한다.

1. 청소년 메이커 교육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협력 사항
2. 시민 메이커 양성에 관한 협력 사항
3. 영메이커 서울의 공동 개최에 관한 사항
4. 기타 호혜적 협력과 홍보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본 협약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기타 협력】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18년 4월 13일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 치 형

메이커교육실천
대표 이지 선